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원 대상 지역을 부산항이 위치한 지역까지 확대〉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854호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515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지원 대상 지역을 부산항이 위치한 지역까지 확대	4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54호)

가.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13.

다. 회 부 일 : 2026. 2. 19.

2.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15호)

가.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3. 17.

다.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54호)

진해신항이 디지털·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

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2.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15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을 포

함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로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산업기반을 공유하는 광역권 단위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및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지원 대상 지역을 부산항이 위치한 지역까지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부산광역시의 정의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종욱의원안)’ 또는 ‘부산항 항만구역(허성무의원안)’을 포함하여, 현행법상 지원대상인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범위를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이 소재한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군)에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 등까지 확대하고,
- ②이전지원계획 수립 주체를 ‘부산광역시장’에서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종욱의원안)’ 또는 ‘광역자치단체장(허성무의원안)’으로,
- ③이전지원계획 수립 시 협의대상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이종욱·허성무의원안), ③해양 특화지구 내 용적률 완화 등의 조례 제정 권한을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이종욱·허성무의원안)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이종욱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 능의 고도화를 위하 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u>부산광역시</u>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 양수산부 관련 기관 · 단체와 집적을 축 진함으로써 국가 경 쟁력 강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부산광역시</u> <u>시(부산항 항만구역</u> <u>을 포함한다. 이하</u> <u>같다)</u>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u>부산광역</u> <u>시</u> 로 이전하는 기 관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u>부산광역시(부</u> <u>산항이 위치한 기</u> <u>초지방자치단체를</u> <u>포함한다. 이하 같</u> <u>다)</u> -----. 3. (현행과 같음)	

현행	이종욱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u>부산광역시장은</u>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u>군수 또는 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u>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는----- -----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u>광역자치단체장</u> ----- ----- <u>시장·군수·구청장</u> -----
② <u>부산광역시는</u>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u>군수 또는 구청장</u>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u>시·도시사는</u> -----	② <u>광역자치단체장</u> ----- ----- <u>시장·군수·구청장</u>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부산광역시장</u> 이 이전지원계획	③ ----- ----- <u>시·도지사</u> ----- <u>가</u> -----	③ ----- ----- <u>광역자치단체장</u> -----

현행	이종욱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 업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그 계획 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 ----- ----- -----.	----- ----- ----- -----, ----- ----- -----.
제10조(해양 특화지구 의 지정) ①·② (생략)	제10조(해양 특화지구 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 음)	제10조(해양특화지구 의 지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부산광역시는 제 2항제1호에 따른 건 축물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7 8조에도 불구하고 1 00분의 120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 를 조례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 ----- ----- ----- ----- ----- ----- ----- ----- ----- -----.	③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국가 핵심 항만의 하나인 ‘부산항’¹⁾은 세계 7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환적 물동량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항만임.²⁾

특히 진해신항이 완공될 경우, 부산항은 2040년까지 59선석 규모의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³⁾⁴⁾, 항만과 연계된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의 집적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런데 부산항의 일부인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 「항만법 시행령」 [별표1]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참고자료 1 참조)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2026년 부산항, 역대 최대 실적 넘어 2,540만TEU 달성에 총력」, 2026.2.2.

3) 참고자료 2 참조

4)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망」, 2024.12.11.

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 부산항 전경 >



자료: 부산항만공사

□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종욱의원안)’ 또는 ‘부산항 항만구역(허성무의원안)’으로 조정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경상남도에도 부여하며, 용적률 특례 지정 주체를 경상남도과 창원시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산과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를 가속화하고, 부산항의 물류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의 내용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이종욱의원안	허성무의원안	비고
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범위에 " <u>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u> "를 포함하도록 정의(제2조)	부산광역시 범위에 " <u>부산항 항만구역</u> "을 포함하도록 명시(제1조)	지원범위를 부산항(경남 창원시 진해구)으로 확대
이전지원 계획수립 주체 (제6조)	부산 광역시장	광역시장 및 <u>도지사</u>	<u>광역자치단체장</u>	계획수립 주체에 경상남도 추가
이전지원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대상 기초지자체 (제6조)	군수 또는 구청장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제6조제1항 의견반영 대상 확대)	<u>시장·군수·구청장</u> (제6조제1항 의견반영 대상 및 제6조제2항 협의대상 확대)	의견수렴 대상 기초지자체 에 창원시 추가
해양특화지구 용적률 특례 주체 (제10조제3항)	부산 광역시	<u>지방자치단체</u>	<u>지방자치단체</u>	용적률 특례 주체에 경상남도 및 창원시 추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의 명칭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제1조에서도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⁶⁾하고 있음.

6)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과 목적 조항은 부산광역시를 ‘해양수도’로 육성하여 국가 해양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을 부산항(경상남도 창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산이라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부산항, 즉 ‘항만’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현행법의 정책방향과 입법의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집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의 지역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관 및 단체들이 도시 외곽으로 분산되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처 및 유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고도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소지가 있음.

셋째, 현행법은 부산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게 신축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임대료 감면, 정착비 지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예산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⁷⁾.

이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례를 인정한 것인바,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예외적 규정들을 인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추가적인 예산소요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

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제12조(예산지원)

장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에 대해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수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해양수도와 해양수도권⁸⁾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부산항을 중심으로 핵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물류 인프라 발전 등 산업 활성화 효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부산광역시는 현행법은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로, 개정안과 같이 이전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이라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8) 해양수도와 1시간 내의 생활권이며, 경제 등 분야가 상호의존 관계를 갖는 권역. 참고로, 권역별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이 수도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구분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음.

< 유사 입법례: 수도와 수도권 >

구분	수도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면적/인구	605km ² / 930만명	약 10,875km ² / 2,610만명
기능	국가 행정 및 정치 중심	과밀 억제 및 균형 발전 관리
근거	「서울시법」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u>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u> 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u>인천광역시와 경기도</u> 를 말한다.

- 경상남도는 해운항만산업은 행정구역이 아닌 신항만 중심으로 클러스터화 되어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항만 인프라와 배후단지가 경남 창원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범위를 부산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울산광역시도 현행법은 ‘부산 단일 도시 육성’에 한정되어, 국가 차원의 동남권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해양산업 집적·연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한 해양수도권 육성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⁹⁾

문 의 처

02)6788-5422

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부산항 위치 및 수상구역

※ 「항만법 시행령」[별표1]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항만명	위치	수상구역
여. 부산항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에서 우도 남동단, 연도 서남단, 가덕도 남측 끝단(북위 34도 59분, 동경 128도 49.5분 지점), 생도 남단, 오륙도 남단,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지점,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지점) 및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의 해면을 제외한 해면 1)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과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선가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375-16번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내) 기부(基部)로부터 정서쪽으로 136미터 떨어진 해상점을 중심으로 하여 건너편 산(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68번지) 정점을 연결하는 일직선 상에 있는 육지부와 만나는 지점 안의 해면 3) 서중 돌출부(북위 35도 01분 50.00초, 동경 128도 48분 33.40초 지점)와 대안 천수대말 돌출부(북위 35도 01분 27.00초, 동경 128도 48분 17.60초 지점)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참고 2

부산 신항만(신항 및 진해신항) 현황

□ 선석 현황

(‘26.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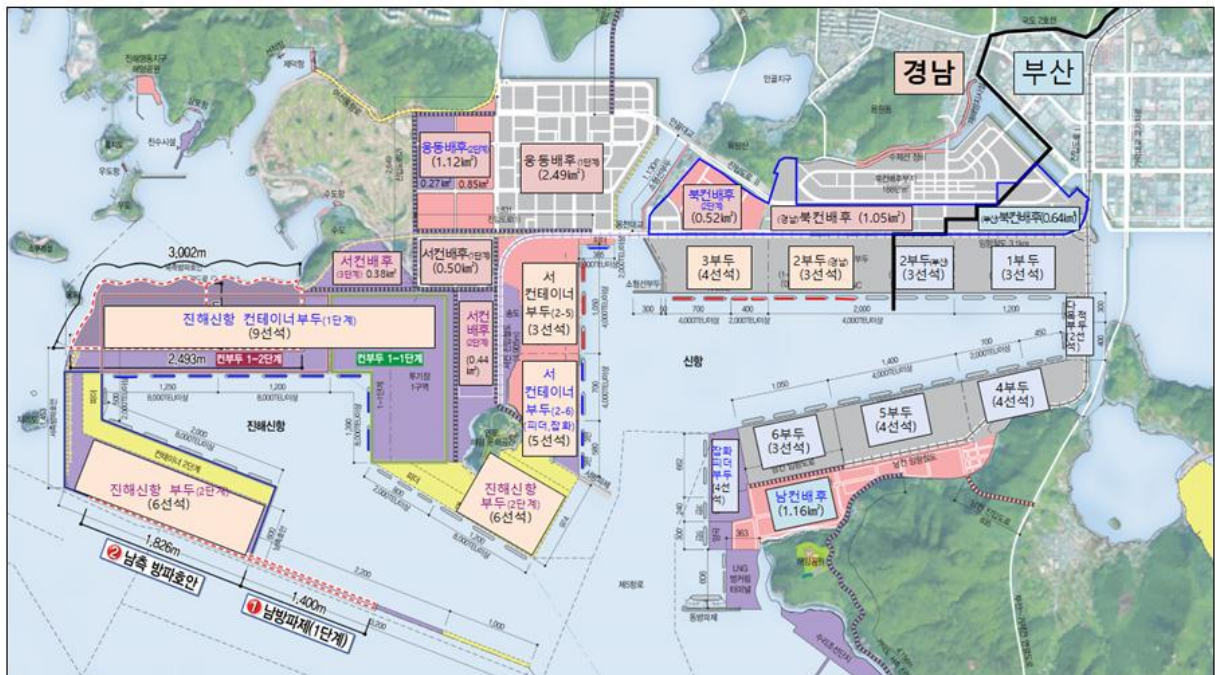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규 모	선석 현황			비 고 (추진상황)
				운영중	조성중	장래	
계		311,215	59선석	29	47	59	
신항	‘95~‘30	160,215	38선석	29 경남 10 부산 19	38 경남 15 부산 23	38 경남 15 부산 23	* 조성중 (서컨5선석, 잡화·피더부두4선석)
진해신항	‘19~‘40	151,000 (1단계 : 79,000 장 래 : 72,000)	21선석	0	9	21	* 조성중 (1단계 9선석) * 장 래 (2·3단계 12선석)

□ 배후단지 현황

년도	총계	경남		부산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조성완료) 2026년	4.68km ²	4.04km ²	86.3%	0.64km ²	13.7%	
		북컨(1.05km ²), 웅동(2.49km ²), 서컨(0.50km ²)		북컨(0.64km ²)		
(공사중)	7.48km ²	5.68km ²	75.9%	1.8km ²	24.1%	
		증) 1.64km ² 웅동2단계(1.12km ²), 북컨2단계(0.52km ²)		남컨(1.16km ²)		
(장래) ~2040년	15.27km ²	13.47km ²	88.2%	1.80km ²	11.8%	
		증) 7.79km ² 서컨2,3단계(0.81km ²), 국가지역전략사업(6.98km ²)		-		남양·성내(5.14km ²) 원포(1.84km ²)

※ 국가전략사업 6.98km² 반영되어 배후단지 총15.27km² 중 경남은 13.47km²로 88% 차지

□ 위 치 도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 문화·체육·의료·상업·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 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